

## 2007 임금교섭,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2006년 11월 17일 연전노조와 정부산하기관과 이루어진 산별집단교섭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 세연구원은 개원 이래 지금까지 임금조정에 관한 한 사용자측의 불가침 영역으로 성역시하며 기여치의 가이드라인을 방패삼아 임금과 관련한 연구원 직원들의 요구와 문제제기를 일축해 왔다. 그러나 기여치의 가이드라인은 기관 전체 예산에 대한 총액한도만을 제시할 뿐이며, 국무조정실이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조차도 임금에 대한 교섭과 조정은 개별 기관의 책임경영에 의한 자율적 노사관계로 해결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우리노조에 속해 있는 경인사연 소속 기관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기관의 임금협약은 기관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 및 기관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과 수준에서 체결되고 있다. 일

례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 과거 기본연봉 인상에 차등을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정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이 시행된 2000년 이후의 기본급 인상을 기준등급으로 환원하는 조치도 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기본연봉에 대해서까지 차별등급을 부여함으로써 평균 물가 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실제로는 임금 하락) 효과를 가져온 데 대한 시행착오를 개선하는 조치이며, 제도의 인식 부족과 오남용에 대한 기관 내 자성의 움직임이라고 판단된다.

임금의 차별등급 부여는 과거 호봉제 시절 연공서열급 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연봉제하에서는 기본연봉에 차별등급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성과연봉 및 특별인센티브 등의 차별화로 충분히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본연봉에까지 차별을 두어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실제로는 노동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연구원에서도 최근 연봉인상액이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직원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기본연봉이 인상되지도 않으면서 성과에서도 소외되는 바람에 연봉이 줄어들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연구원 내 대다수의 비박사 직원들 연봉이 평균적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직원들의 연봉수준보다 하회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의 개선책이 시급하

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노조는 이번 임금교섭에서 기본연봉 차별등급의 폐지와 아울러 기본연봉 수준이 낮은 직원에게 유리한 '하후상박' 개념에 입각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과연봉과 관련하여, 전체 직원의 동의 없이 제정되어 그 규범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성과급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2~3년간 그 기준에 의거,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성과금이 지급되어 다수의 조합원이 피해를 입은 사실, 그리고 2006년 임금교섭에서 최대 이슈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의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노조는 금번 임금교섭에서 위 기준의 폐지 및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시에 기본연봉 대비 비중이 상당히 큰 성과연봉의 일부를 기본연봉으로 전환하여 기본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 격차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 외 3급 이하 직군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업무장려금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선택적 복지의 가용금액을 확충하고 출산장려금 등 추가적인 복지혜택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우리는 이번 임금교섭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란다. 또한 제8대 황성현 원장의 경영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사 간의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임금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화합의 노사관계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 2007년 임금교섭 일정 및 방향

### ■ 교섭일정

- 자료요구 : 1차 9월 13~20일(무응답)/ 2차 10월 4일
- 자료 취합 및 분석 : 10월 12일까지
- 교섭기간 : 10월 15일~11월 2일(약 3주간 : 실무교섭 진행)
- 본교섭 및 타결 : 11월 2주차(타결 예정)

※ 임금교섭 자료 요구에 대한 사용자측의 제출이 10월 초로 늦어지면서 임금교섭의 전반적인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자료도 '제출불가' 답변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구체적인 임금자료의 부재로 인해 교섭이 난항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측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며, 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임금교섭 타결되기를 희망합니다.

### ■ 임금교섭의 원칙 및 방향

1. 직원의 동의 없이 제정(2004년 8월)된 '성과급지급기준' 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2. 기본연봉은 등급 간 차등을 폐지하고 하후상박의 원칙을 준수한다.
3. 성과연봉 중 일부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전환한다.
4. 하위직군의 근로의욕고취를 위하여 업무장려금을 마련한다.
5. 직원의 연봉산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6. 선택적 복지 및 출산 장려금 등 추가적인 복지를 확충한다.
7. 기 타

※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제시를 바랍니다. 특히, 추가적인 복지확충 등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조합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교섭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노조 타지부의 임금협약 사례를 소식지 말미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 보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연구노조 2006년 임금협약 사례

지 부	임금인상 내용	기 타														
한국노동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연봉 : 6.7%(정률) + 3만원(정액) 인상</li> <li>○ 성과연봉 : 직군별·평가등급별(5단계) 차등 인상(연 1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위원급 : 9 ~ 0%</li> <li>· 전문·행정직 : 7 ~ 2%</li> </ul> </li> <li>○ 기본연봉 vs 성과연봉 비율 → 7 : 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장려금 지급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자녀 30만원</li> <li>· 2자녀 70만원</li> <li>· 3자녀 100만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연봉 차등지급률 폐지: 2% + 정액(16만원/월)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2005년의 기본연봉을 평균등급의 인상률로 환원조치</li> </ul> </li> <li>○ 성과연봉 비중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100(기본) : 54(성과) → 2007년 100 : 44</li> <li>· 평가등급간 차등폭 : 부연구위원급 ↑ ±4%, 책임연구위원급 ↓ ±2.5%(매월 적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진자의 기본연봉인상(하후상박 비율)</li> <li>○ 재직중 박사학위 취득자 기본연봉 가산</li> <li>○ 출신경력급 지급 합의 등</li> </ul>													
정보통신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액임금 기준 평균 2% 인상</li> <li>○ 성과연봉 : 직군별·등급별(5단계) 정액 차등(반기, 연2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기준 예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연봉 차등지급률 폐지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2006년 기준 미만 등급에 대해 평균 등급으로 보전</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35%;">직 급</th> <th style="width: 50%;">등급간 차등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보직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선임연구위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급 및 책임연구위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급 및 책임연구위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5만원</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일반직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급 및 연구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조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직 급	등급간 차등액	보직자	선임연구위원	130만원	2급 및 책임연구위원	70만원	2급 및 책임연구위원	55만원	일반직원	4급 및 연구원	40만원	조원
구 분	직 급	등급간 차등액														
보직자	선임연구위원	130만원														
	2급 및 책임연구위원	70만원														
	2급 및 책임연구위원	55만원														
일반직원	4급 및 연구원	40만원														
	조원	25만원														
통일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등 성과연봉 및 성과 인센티브 지급시 조합과 사전 합의</li> </ul>															

주: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는 2007년 임금협약의 내용임